

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전용기 · 윤종균
임호선 · 박용갑 · 김승원
안태준 · 김우영 · 이상식
박홍배 · 김한규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관리원”)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,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채권발행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·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시설물관리계획 검토와 같이 관리원이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등 관리원의 역할이나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,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7호·제8호 신설 및 제15조제1항 등).

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, 정밀안전점검”을 “정밀안전점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

8.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

제13조제1항 중 “건설공사의 안전,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”를 “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대부 등의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

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사업)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	제5조(사업)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,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	2. -----정 밀안전점검----- ----- -----
3. ~ 6. (생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사업
<신설>	8. 시설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리원 부지 및 시설 활용 사업
7. · 8. (생략)	9. · 10. (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)
제13조(채권의 발행) ① 관리원은	제13조(채권의 발행) ① -----

건설공사의 안전, 시설물의 안전 및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5조(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)
국가는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-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-----
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국유·공유재산의 사용허가·대부 등의 특례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

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원이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